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7. 10 선고 2024가단324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6. 5.

판 결 선 고 2024. 7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 
가.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72.72㎡를 인도하고,  
나. 8,4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3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 
다. 2024. 3. 28.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,1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단, 연체차임 등 액수를 8,400,000원으로,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4. 3. 28.부터로 감축)

### 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88조(재판상 자백,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감축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)

판사 황여진

별지